

규정류(개정)입안서

1. 규정류명 :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규정

2. 규정류(개정)사유 :

- 가. 장안대학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자율혁신계획서와 정합성을 확보하고 대학 성과관리 체계에 부합하도록 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을 정비하고자 함.
- 나.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- 다.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 환류(CQI) 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사업 운영의 질적 개선과 평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 :

- 문장부호 정비에 따른 자구 수정
- 제4조(사업추진위원회)의 명칭을 자율혁신계획서에 맞추어 ‘대학혁신운영위원회’로 변경함.
- 제4조2(자체평가위원회) 및 제4조3(대학혁신실무위원회) 조항을 신설하여 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대학혁신운영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해 성과 환류(CQI)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.

4. 시행예정 또는 요청일 :

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관리 및 거버넌스 운영이 2025년 9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추진된 점을 고려하여 2025년 9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자 함.

5. 참고사항

- 가. 관련규정: 제규정류관리규정,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규정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관련부서: 해당사항 없음

6. 첨부사항

- 가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
- 나. 규정류(개정)안 전문 1부.

2026년 8월 5일

소관부서 :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주윤황



관련부서 :

(인)

신·구조문대비표

규정명 :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규정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제1조(목적) (생략) 제2조(근거 및 적용) 본 규정은 교육부의 「“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(‘25~’27) 기본계획」에 근거하여 적용한다. 제3조(조직) (생략) <신설> 제4조(사업추진위원회) ① 본 사업의 심의 및 의결, 예산 배정 등 주요사항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사업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 위원회는 사업의 심의 및 의결과 예산 배정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위원은 교무위원, 외부전문가 및 학생 대표 등 15인 내외로 구성한다. ③~④ (생략)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사업계획, 최종보고서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. 사업비 가이드라인 마련 및 예·결산에 관한 사항 3.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. 타 재정지원사업과의 유기적 연계와 중복 집행방지에 관한 사항 5. 사업성과 점검 및 환류에 관한 사항	제1조 (현행과 같음) 제2조(근거 및 적용) 본 규정은 교육부의 「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(‘25~’27) 기본계획」에 근거하여 적용한다. 제3조 (현행과 같음) 제3조의2(사업기간) 본 사업의 기간은 협약체결 시 정한 기간으로 한다.<신설 2026.00.00.> 제4조(대학혁신운영위원회) ① 본 사업의 심의 및 의결, 예산 배정 등 주요사항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대학혁신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(개정 2026.00.00.)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위원은 교무위원, 외부전문가 및 학생 대표 등 15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. (개정 2026.00.00.) ③~④ (현행과 같음)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 (개정 2026.00.00.)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개정 2026.00.00.) 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 한다. (개정 2026.00.00.) 1. 사업의 운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(개정 2026.00.00.) 2. 사업과 관련한 대학 특성화 연계 추진방향 및 계획 수립 자문에 관한 사항(개정 2026.00.00.) 3. 사업 성과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(개정 2026.00.00.) 4. 사업비 편성, 조정 및 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(개정 2026.00.00.) 5. 그 밖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(개정 2026.00.00.)	문장부호 정비에 따른 자구 수정 사업 기간 명시 필요 장안대학교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자율혁신 계획서와의 명칭 및 기능 일치 및 큰 따옴표 수정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심의·의결 기능의 범위 유연화 및 구체화에 따른 내용 수정 및 삭제

제8조(외부평가) (생략) <신설> 제9조(사업비관리근거)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”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 “에 따르며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리 감독기관 및 유관기관의 지침에 따른다. 제10조~제11조 (생략) 제12조(규정의 개정) ① 본 규정의 개정은 사업단장의 제안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. 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	제8조(외부평가) (현행과 같음) 제8조의2(보고) 사업 종료 후 사업의 일체 사항(결산 및 실적, 성과평가 보고 등)에 대해 작성한 성과평가보고서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신설 2026.00.00.> 제9조(사업비관리근거)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“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”에 따르며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리 감독기관 및 유관기관의 지침에 따른다. (개정 2026.00.00.) 제10조~제11조 (현행과 같음) 제12조(보칙)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규정의 개정 및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대학 혁신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. (개정 2026.00.00.) 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 부칙 <u>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하되, 2025년 9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.</u>	혁신지원사업의 경우 연간 사업이 종료된 후, 연구재단과 교육부에 성과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동일 보고서로 총장님께 보고하고자 함 문장부호 정비에 따른 자구 수정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명시를 통한 절차적 타당성 확보 및 대학 표준 보칙 양식에 맞춘 조항 정비 관리규정 대원칙에 따라 번호 구분 없이 한 문장으로 연속 작성하여 2025년 9월 1일 자 실무 성과 소급 보호 조치
---	--	---

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안 전문

공포 제2026-0호(개정 2026. 00. 00.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장안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이라 한다)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(이하 “사업” 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,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, 공정성,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근거 및 적용) 본 규정은 교육부의 「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(’ 25~’ 27) 기본계획」에 근거하여 적용한다.(개정 2026. 00. 00.)

제2장 조직 및 운영

제3조(조직) 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단은 총장 직속기구로 한다.

제3조의2(사업기간) 본 사업의 기간은 협약체결 시 정한 기간으로 한다.<신설 2026. 00. 00.>

제4조(대학혁신운영위원회) ① 본 사업의 심의 및 의결, 예산 배정 등 주요사항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대학혁신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(개정 2026. 00. 00.)

②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위원은 교무위원, 외부전문가 및 학생대표 등 15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.(개정 2026. 00. 00.)

③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,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.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(개정 2026. 00. 00.)

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(개정 2026. 00. 00.)

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(개정 2026. 00. 00.)

1. 사업의 운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(개정 2026. 00. 00.)

2. 사업과 관련한 대학 특성화 연계 추진방향 및 계획 수립 자문에 관한 사항(개정 2026. 00. 00.)

3. 사업 성과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(개정 2026. 00. 00.)

4. 사업비 편성, 조정 및 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(개정 2026. 00. 00.)

5. 그 밖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(개정 2026. 00. 00.)

6. <삭제 2026. 00. 00.>

제4조의2(자체평가위원회) ① 사업의 성과 관리 및 질 제고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“평가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 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위원은 내부위원, 외부전문가 및 학생대표 등 15인 내외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성과 목표 달성도 분석,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결과의 운영위원회 보고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,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[본조신설 2026.00.00.]

제4조의3(대학혁신실무위원회) ① 사업의 원활한 추진, 실무 협의 및 성과 환류(CQI) 관리를 위하여 대학혁신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실무위원회는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유관부서 실무자로 구성하되, 심의 안전의 효율적인 처리 및 부서 간 협업 강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긴밀히 연계하여 운영한다.

③ 실무위원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등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[본조신설 2026.00.00.]

제5조(사업단) ① 본 대학교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장안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 이라고 한다)을 두며, 사업단장과 사업부단장을 두고, 사업단장은 사업 운영을 총괄하고, 사업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사업단장 궐위시에 사업단장 재임명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.(개정 2026. 00. 00.)

② 사업단장은 총장이 임명하며, 사업부단장은 사업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사업단장과 사업부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총 사업기간 동안 연임할 수 있다.

④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단 내에 사업전담조직을 설치 및 운영한다.

제6조(사업전담조직) ①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관리부서, 사업추진부서 등을 사업전담 조직으로 설치 및 운영한다.

② 사업전담조직에는 전문위원, 행정직원, 조교 등을 둘 수 있다.

③ 사업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사업관리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의 수립, 운영, 자체평가, 성과지표관리, 지출원인행위관리, 소관 위원회 운영, 전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와 관련된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.

2. 사업추진부서는 세부과제 계획수립, 운영, 결과보고, 지출원인행위 및 이와 관련된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.

제7조(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) ① 사업단에서는 매년 사업의 추진방향, 사업예산, 추진일정, 업무위탁 등 주요사항이 포함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, 수정된 사업계획서는 사업을 위탁 받아 관리하는 기관(이하 “**전문기관**”이라 한다)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.(개정 2026. 00. 00.)

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,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세부사업 항목의 변경 없이 세부사업 내에서의 예산 조정

2. 세부사업간 예산 조정 및 신규 사업 추가

3.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의 변경

4. 그 밖에 교육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

제8조(외부평가) 사업단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성과 점점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 전략과제의 성과에 대한 외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8조의2(보고) 사업 종료 후 사업의 일체 사항(결산 및 실적, 성과평가 보고 등)에 대해 작성한 성과평가보고서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신설 2026. 00. 00.>

제3장 사업비 관리

제9조(사업비관리근거)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“**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**”에 따르며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리 감독기관 및 유관기관의 지침에 따른다.(개정 2026. 00. 00.)

제10조(회계) 사업비 관리 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한다.

제11조(사업비집행기본원칙) ① 한국연구재단에서 공고한 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사업비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한다.

③ 사업비는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한다.

④ 사업비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총장이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하며, 관련 법률·법령·규칙에 준하여 집행해야 한다.

⑤ 운영규정에서 정의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집행할 수 있다.

⑥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의 사업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중점으로,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 및 정책사항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집행해야 한다.

제4장 보칙

제12조(보칙)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규정의 개정 및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대학 혁신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.(개정 2026. 00. 00.)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하되, 2025년 9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.